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88

발의연월일: 2023. 5. 12.

발 의 자:이태규·김예지·조경태

최연숙 · 김선교 · 권명호

金炳旭・서병수・박덕흠

김 웅・정운천・권은희

이종성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다변화하고 있으나, '무관용 원칙'의 지속 완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둔화되고, 분리제도의 한계로 피해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교육적 해결에도 한계를 보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 4. 12.)'을 수립하였으며,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함 과 동시에,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견인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바,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 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 나. 학교관리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 화함(안 제11조).
- 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안 제11조의4 신설).
- 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이하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출석정 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안 제17조).
- 사.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 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 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 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 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 차. 학교의 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6).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 보"를 "사이버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설치에"를 "설치 및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활동

- 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일 것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복구된"을 "복구되었거나 복구약속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 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를 "책임교사"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보복행위"를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위"를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각 호"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6항 및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를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 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 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 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안이 중 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수집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 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 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 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행위를 말한다. 말한다.

2. ~ 5. (생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⑪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⑪ (생 략)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 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⑩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 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3)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설치 및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의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 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 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 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

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 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 발 등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 는 학교폭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 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학교 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 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 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 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 지도일 것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을 것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① ------

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 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 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4. (생략)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복구되었거나 복구약속이 있
<u> </u>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 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 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 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 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 ①·② (생 략)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 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 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 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 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 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어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행?	정적	• 재정조	보 지	원을	할	수
	<u>있</u> ι	<u> </u>					
	<u>⑤</u>	(현형	생 제3호	}과 7	같음)		
제	143	조(전	문상담	교사	배치	및	전
	담;	기구	구성)	1 •	2	(현행	과
	같-	음)					
	3						
				<u>책</u>	임교	<u>사</u>	

④ ~ ⑨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 방하기 위하여 교사 · 학생 · 학 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 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지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 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u>보</u> 복행위의 금지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
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u>있다.</u>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1. (현행과 같음)
2
<u></u> 보
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3. ~ 9.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 9. (현행과 같음)
②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6호부터
제9호까지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u> </u>
<u>제1항제1호, 제3</u>
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
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신 설>

⑤ · ⑥ (생 략)

① 학교의 장이 <u>제4항</u>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 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 다.

⑧ ~ ⑫ (생 략)

제17조의2(행정심판) ①·② (생 저략)

<신 설>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
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
호 조치의 기간은 제12조에 따
른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
로 정할 수 있다.
<u>⑧</u> ・ <u>⑨</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⑩제4항부터 제6
<u>항까지</u>
<u>.</u>
<u>①</u> ~ <u>⑤</u> (현행 제8항부터 제1
2항까지와 같음)
ll 17조의2(행정심판)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2항에 따른 행정 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 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

 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략) <신 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 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

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 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 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 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 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 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 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 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안 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삭 제>

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ㆍ정 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생 략) <신 설>

② (생략)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bigcirc (현행과 같음)
 -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수집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정보를 소 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